

#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2005. 3

통일정세분석 2005-02

#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북한경제연구센터 소장)

최수영 (북한경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07	I. 개황
08	II. 경제개혁 추진 실태
08	1. 경제관리
08	• 경제운영 방침
10	• 법·조직 정비
13	2. 거시경제
13	• 가격·임금
15	• 재정
18	• 금융·외환
20	3. 산업부문
20	가. 농업개혁
	• 생산방식   • 분배방식
24	나. 기업개혁
	• 경영관리   • 생산관리   • 재무관리   • 노무관리
29	다. 상업개혁
	• 상업관리   • 유통구조   • 부문별 운영체계
35	4. 대외경제
35	• 경제개방
35	• 대외무역
37	• 외자유치
39	III. 성과 및 문제점
39	1. 성과
39	• 의식변화
40	• 산업생산성 제고
41	2. 문제점
44	부록
45	① 경제개혁 연표
46	② 북한의 경제개혁·개방 주요 조치
47	③ 북한의 농업개혁 조치 주요 내용
48	④ 북한의 기업 개혁 조치
49	⑤ 북한과 중국·베트남의 초기 경제개혁 비교



## 개 황

○ 북한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경제 관리 개선조치」(02.7)에 이어 시장기능 도입 등 추가 경제개혁 조치를 시행

- 02.7 ① 물가(25배) · 임금(18배) · 환율(70배) 인상 ② 기업경영 자율권 확대 ③ 영농 인센티브제 강화 ④ 배급제 폐지 등을 단행
- 02.9~11간 「신의주특별행정구」(02.9) · 「금강산관광지구」(02.10) · 「개성공업지구」(02.11)를 지정, 개방지역을 확대
- 03.3 농민시장의 종합시장 개편, 일부 국영상점 경영권의 기관 · 기업소 이양, 개인의 서비스업(식당 · PC방) 허용 등 상업개혁을 실시
- 04.1 농업부문의 「가족단위 영농」과 공업부문의 「기업개혁」 조치를 시범 실시

○ 북한은 이같은 경제개혁 추진으로

- 농업 · 경공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상거래가 활성화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 물자부족에 따른 인플레이션 심화, 환율 폭등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강 · 절도, 빈부격차 심화 등 자본주의적 병리현상도 점증

## 경제개혁 추진 실태

### 1. 경제관리

#### ■ 추진 연혁

- 01.1 | 북한은 「新思考」를 주창한데 이어 '01.10에는 「경제관리 개선 방침」을 하달
- 02년 |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전후 경제개혁 관련 법령 신설 및 개정 작업에 착수
- 02.9 | 「先軍시대 경제건설 노선」(국방공업 우선, 경공업·농업 동시발전 노선)을 새로운 경제운영 방침으로 제시
- 03년 | 黨·政의 비생산적 인력을 축소하는 한편 신진 테크노크라트를 등용하여 세대교체를 추진
- 04년 | 내각의 경제관리 권한을 강화하여 경제개혁을 주도하도록 하고 黨·軍의 경제개입을 축소

#### ■ 경제운영 방침 : 신사고·실리 등 개혁논리 개발 및 강조

- 01.1 북한은 「新思考」를 제기하면서 사회 전반의 의식·행동 변화를 독려하는 등 경제운영 변화를 시사

- 김정일은 '낮은 틀과 재래식 방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실천해 혁신을 이룰 것' 을 주장
- 연이어 「종자론」·「新자력갱생론」·「단번도약론」 등 신사고를 보다 구체화한 각론적 개념을 개발,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촉구

➔ 신사고의 세부 개념

구 분	내 용
종자론	각 분야에서 단기간 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종자 개발을 독려 (양어: 메기, 대용작물: 감자, 산업: 컴퓨터·IT)
新자력갱생론	다른 나라와의 협력관계를 집단적 자력갱생으로, 과학기술 응용을 창조적 자력갱생으로 재해석
단번 도약론	과학기술 중시, IT산업 집중 육성 등을 통해 단기간내 경제 발전을 달성

○ 01.10 김정일은 「경제관리개선 방침」을 하달하여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의 정치적·이론적 토대를 제공

- 「사회주의원칙 고수下 최대 실리 획득」을 경제개혁 조치의 기본 원칙으로 규정
- 계획 분권화,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 운용, 수익위주 기업 평가, 실적주의 분배, 과학기술과 생산 결합, 가격·임금 재조정, 불합리한 사회보장 정리 등 개혁조치의 필요성을 사전 제시

○ 02.9 「국방공업 우선」 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을 새로운 경제운영 방침으로 제시함으로써 기간산업과 민생부문의 관리 운영 및 경제개혁 추진 논리로 활용

- 국방공업 · 중공업에는 국가통제下 자원을 우선 배분하되, 경공업 · 농업 · 상업부문에서는 시장지향적 개혁을 추진, 독립채산제 강화
- 혁명의 주력군을 군으로 규정(先軍後勞), 군을 경제건설에 활용하는 한편 시장요소 도입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장애물을 해소

## ■ 법 · 조직 정비 : 경제법령 제 · 개정, 내각권한 강화, 세대교체

○ 경제개혁 · 개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규의 제정 및 개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착수

- 2000년 이후 인민경제계획법(01.5) · 손해보상법(01.8) · 상속법(02.3) · 농업법(02.6) 등 경제법령을 신규 제정 및 개정(00.1~02.6간 16건) 함으로써 경제운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한편 개혁 · 개방을 사전 준비

\* 북한의 「공화국 법전」(2000년, 103건중 46건) · 「대중용 법전」(2004년, 112건중 48건) 수록 법률중 절반이 경제관련 법률

\* 인민경제계획법은 국가계획 작성과정의 융통성 인정, 농업법은 작업반 우대제 폐지와 분조중심의 영농관리, 상속법은 주택 · 자동차 · 저축 등 생활용 개인소비재의 상속 허용, 손해보상법은 재산권 보호를 규정

- 경제개혁 조치(02.7) 이래 물가 상승, 수익성 위주의 기업경영, 시장 기능 강화 등 경제현실 변화에 맞게 외국투자은행법(02.11)·회계법(03.3 제정)·재정법(04.4)·상업법(04.6) 등을 보완(13건 확인)
  - \*외국투자은행법(18조): 합병은행 등록자본금 3,000만원 이상→22억 5,000만원 이상
  - \*회계법·재정법은 기업평가 기준을 생산량에서 이윤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업의 경영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상업법은 자유로운 상거래 등 시장 활성화 방안을 규정
- 특히 02.11 개성·금강산특구 개발 관련 법(2건)·하위규정(20건)을 제정한데 이어 북한상품의 신인도 제고를 목적으로 원산지명법(03.8)을 채택, 남북경협을 안정적 추진과 국제경제질서 적응을 모색
- 당·정 유희인력을 정리하여 국가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신진기술관료를 등용, 세대교체를 진행하면서 개혁 주도세력으로 활용
  - 중앙·지방 당 일부 조직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고 유급 당원을 대대적(20~30%)으로 축소하여 산업현장에 재배치
  - 내각 경제관료들의 인력구조를 전문화·연소화하는 가운데 은행·기업 책임자로 경영마인드를 갖춘 30~40대 전문가를 발탁

- \* 대경추위원장 백현봉 47세, 무역은행총재 오광철 44세,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지배인 김형남 40세 등(발탁 당시 나이)
- 공무원 채용 방식을 종전의 추천·면접 형식에서 정치·경제과목 등의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04.1)
- \* 또한 무역종사자들은 외국어 및 재정·금융·국제상거래 과목 시험을 거쳐 채용
- 당·군의 경제사업 축소, 내각의 경제관리 권한 강화 등 조직 개편을 통해 경제개혁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보장
- 당·군 등 비경제부문 기관이 운영하는 일부 사업체를 축소하고 내각에 이관
- 무역성 산하의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내각 직속 기관으로 격상(04.5)시킨데 이어 민경련 등 대남경협 기관들을 통합, 내각 산하 省級기구인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신설(04.7)
- \* 대상기관 : 민경련(남북교역)·중앙특구개발지도총(개성공단)·금강산관광총회사(금강산관광특구) 등

북한은 경제개혁의 일관성·효율성 유지를 도모하고 있으나, ①개혁·개방 노선의 공식 천명이 없고 ②행정개혁(당의 경제개입 차단)이 동반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 비해 다소 미진

## 2. 거시경제

### ■ 추진 연혁

02년 | 국가예산 징수 책임을 각 부문별 중앙기관에서 지방정권 기관으로 변경하고, 지방예산제를 강화

02.7 | 가격(25배)·임금(18배)을 시장현실에 맞게 인상한데 이어 02.8에는 환율을 현실화(70배)

03.3 | 종합시장 개설과 03.6 「外貨교환소」 운영으로 시장 가격의 적용 범위를 확대, 실질적인 2중 가격·환율제 운용

03.5 | 산업투자 자원 확보 및 인플레이션 조절을 위해 「인민생활공채」를 발행

03.9 | 징세기관인 「集金所」 신규 설치

04년 | 기업에 대해 자체 생산물 가격 책정과 이윤 범위내 임금 인상 지급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기업개혁」 조치를 시범 실시

### ■ 가격·임금 : 국제시세 및 시장원리 반영, 기업·개인의 결정권 확대

- 02.7 물가·임금을 시장상황에 맞게 현실화하는 가운데 실적주의 임금제를 강화하는 한편 가격 책정권한을 하부 단위에 일부 이양

- 정책적으로 낮게 설정해 왔던 민생관련 상품·서비스 가격(재정으로 보조)을 원가·이윤이 반영된 수준으로 대폭 인상(평균 25배)
    - \* 쌀 kg당 8전→44원(550배), 돼지고기 kg당 7원→180원(26배), 전기 kWh당 3전→2.1원(70배)
  
  - 임금도 부문·직종·기능등급(무기능·기능·고급)별로 차등 인상(평균 18배, 월평균 2,000원)하여 생계비 증가분을 보전하고, 생산 실적에 의한 임금지급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노동의욕을 고취
    - \* 03.1 조선신보, “4인가족 1세대중 2명이 노동에 종사한다는 전제하 생활비가 4,000원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1인당 임금을 2,000원, 농민은 2,300원 가량으로 산정”
    - \* 03.3 국가가격제정국 강경순 처장 “계획을 80% 달성하면 기준임금의 80%를, 200%를 달성하면 200%의 생활비(임금)를 보장”
  
  - 국정가격도 시장 需給에 기초하여 수시 조정하도록 규정하는 가운데 일부 상품의 가격제정권을 지방과 공장·기업소에 부여
    - \* 03.3 국가가격제정국 강경순 처장,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국정가격을 제때 조정”
  
  - 03.3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개편하고 시장가격을 통한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의 「2중 가격제」를 운영
-

- 개인과 기업이 운영하는 상점·식당 및 종합시장에서의 거래는 시장가격 또는 이와 유사한 합의가격(판매자와 구매자가 합의한 가격)을 적용
- 국가가 품목별 최고한도 가격을 고시, 무분별한 가격인상을 통제하면서도 동가격 범위에서 상인들의 자율적인 가격 조정을 허용
  - \* 그러나 실제 거래에서는 당국의 최고한도 가격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실정
- 04년 이후 인플레이션 심화로 기업 채산성과 주민 생활고가 가중되자 가격·임금 제정에 대한 국가통제권을 추가 완화
  - 공장·기업소가 자체 생산한 소비품의 가격·규격을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율 책정할 수 있도록 조치
  - 기업소가 가처분 이윤내에서 종업원의 임금을 자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부 경제단위의 임금지급 권한을 보다 확대

## ■ 재정 : 재정수입·지출체계 조정으로 재정구조 합리화 추구

- 02.7 경제개혁 조치를 기해 각종 보조금 폐지·예산제기관 축소·새로운 재정 수입 항목 신설 등으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모색
  - 무상에 가깝던 쌀·주택·에너지·운수서비스 가격을 현실화하여 가격 보조에 지출되는 재정을 축소

- 토지사용료를 신설하는 등 추가 稅源을 발굴
  - 국가예산에만 의존해 운영되는 예산제 기관에 수익사업을 허용하여 국가채산제·반독립채산제 기관으로 개편 시도
    - \* 04.4 재정법 제30조 개정 : 기업소 구분시 반독립채산제를 추가(舊法 : 예산제와 독립채산제로만 구분)
- 경제시스템의 변화를 반영하여 재정 수입·지출의 항목을 조정
- 국가납부금을 「번 수입」에 기초하여 징수함에 따라 간접세 성격의 「거래수입금」을 폐지하고, 이를 직접세 성격의 「국가기업이익금」에 통합하여 「국가기업이익금」을 신설, 예산수입 원천을 단순화
    - \* 02.3 최고인민회의, “올해 예산수입 가운데서 「국가기업이익금」이 77.6%로서 사회주의 국영경리에서 이루어진 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
    - \* 04.4 재정법 제13조 개정 : 예산수입 원천을 「국민소득」으로 수정(舊法 : 거래수입금·국가기업이익금·협동단체 이익금·봉사료 수입으로 명시)
  - 02년부터 「감가상각금」을 기업소에 재투자 자금으로 유보토록 한데 이어 기업의 미사용 여유자금을 국가가 동원하지 못하도록 명문화(04.4 재정법 제36조), 재정적 측면에서 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보를 보장할 수 있도록 허용
    - \* 02.3 최고인민회의, “지금까지 예산수입으로 받아들이던 「고정재산 감가상각금」을 기업소에 남겨 놓고 생산확대 기금으로 사용”
-

- 한편 종전 국가예산에서 지급되던 기업 재투자 자금의 일부를 기업이 자체 조달(04.4 재정법 제32조)토록 하여 재정지출 요인을 감축
- 이에 앞서 2000년에는 「인민경제비」내의 「추가적 시책비」(주로 가격 보조금)를 「사회문화비」와 합쳐 「인민적 시책비」로 변경
- 예산수납체계를 「부문별 수납체계」(성·관리국이 예산 징수)에서 「지역별 수납체계」(지방인민위원회가 예산 징수)로 변경(02년) 하면서 「지방예산제」를 강화, 국가의 재정확보·지방보조 부담을 완화
  - 지방인민위원회에 域內 기업소에 대한 예산징수 권한을 일임하면서 서도 일정액을 중앙에 의무 납부토록 규정
    - \* 02년 경제연구 2호, “지역별 수납체계는 예산 소속과 부문에 상관없이 모든 공장·기업소가 지방정부를 통해 예산을 납부하는 체계”
  - 반면 지방에 예산편성 과정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사회보장·보험을 담당토록 조치
    - \* 02년 경제연구 2호, “새로운 지방예산 편성방법은 지방별로 국가납부 몫을 정해주고 해당 예산집행 단위가 자체적으로 수입과 지출계획을 수립”



- 화폐경제화가 진척되고, 재정확충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公債를 발행하는 가운데 재정기관의 기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
  - 03.5 산업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인민생활 公債」를 발행
    - \* 03.7 중통, “公債 판매수입금은 ①평양시 현대화 ②발전소건설 ③토지 정리 ④혁명사적지 ⑤객차 생산 ⑥약수 가공공장 건설 등에 우선 사용”
  - 03.9 재정성 산하와 각省去 「集金所」(징세기관)를 신규 설치, 효율적인 예산수납 체계를 구축
  - 03.11 재정기관 역할을 강화, 포괄적 재정·금융협의체인 「국가재정 은행위원회」를 「국가재정 금융위원회」로 개편(04.4 재정법 제 48조)함으로써 재정정책과 금융정책간의 보완성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시사
    - \* 「국가재정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내각 부총리, 부위원장은 재정상·중앙은행 총재, 위원은 당·정·군 재정관계자 및 은행·계획·노동·통계부문 관료와 학자로 구성

## ■ 금융·외환: 환율 현실화 및 금융개혁·개방 준비

- 02.7 경제개혁 이후 기존의 단일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면서도 환율 현실화 조치를 단행

- 02.8 국정환율(1달러:1원)을 폐지, 무역환율(現 공식 환율)로 단일화 하면서 환율을 美貨 1달러 당 2.2원에서 153원으로 70배 인상
  - 한편 03년 이후 공식환율과 암시장 환율간의 심각한 괴리가 재연 되자, 종합시장 등에 「外貨교환소」를 설치하고 내국인들에게 암시장 환율로 환전해주는 등 실질적으로 2중 환율제를 운용
  - 또한 03년 하반기에 전당포 영업을 허용, 주민들에게도 단기 생활 자금을 융통해주는 한편 국가 재정수입원으로도 활용
- 해외 선진 금융기법·금융개혁 경험 습득, 경제이론 교육과정 개편 등을 통해 전문인력의 저변을 넓힘으로써 금융개혁에 사전 대비
- 개혁 이후 시장경제이론과 금융·보험·통상 등의 연수를 위해 중국·베트남·EU 등에 해외연수생을 대거 파견
  - 이와 함께 김일성대 경제교과서에 「수요·공급에 의한 가격결정」, 「현금유통 기반의 재정금융」 등 시장경제 이론을 대폭 가미

가격·임금 등 거시경제 부문은 북한의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의 핵심 사안이었으나, 이후 ① 가격·임금·환율의 자유화 확대 ② 국가재정의 비중 축소 및 조세제도 시행 ③ 민간 상업은행 창설 등이 지연

### 3. 산업부문

#### 가. 농업개혁

##### ■ 추진 연혁

- 96.3 분조관리제를 개선하여 분조구성을 老·壯·靑 배합(10~25명)에서 가족단위(7~8명)로 변경하고 생산계획을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하면서 계획 초과생산물에 대한 자유처분 허용(일부지역 시범실시)
- \* 분조관리제 : 협동농장의 말단 영농단위인 분조별로 농경지와 노력·생산 도구 등을 받아 농사후 계획수행 정도에 따라 11~12월중 결산분배를 받는 제도로 66년 최초 도입
- 99.1 벼·옥수수 위주 재배에서 각 협동농장의 실정에 따라 감자·약초 재배도 허용하는 등 作物선택권을 일부 부여
- 02.7 이후 분조인원 축소·국가수매량 감축에 이어 04.1 포전담당제(가족단위 영농)를 시범 실시하는 등 농업개혁을 확대

#### ■ 생산방식 : 농업생산 증대를 위해 집단영농의 비효율성 개선에 주안

- 농업법을 개정(02.6)하는 한편 분조 규모를 축소하고 협동농장에 세부 생산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하는 등 농장의 재량권을 확대

- 작업반 우대제를 폐지하고 분조관리제 중심의 관리운영으로 전환 (농업법 제72조)
- 협동농장의 기초 생산단위인 분조의 인원을 축소(10~25명 → 5~13명) 하여 책임영농을 유도
- 벼를 제외한 나머지 작물을 협동농장이 선택케 하는 등 作目 선택권을 확대
- \* 03.9 국제구호단체 카리타스 「젤웨거」 국장, “북한의 일부 농장은 과거와 같이 당국의 지시대로 강냉이만 심지 않고 자신들이 재배작물 선택 가능”

#### ○ 일부 협동농장에서 「포전담당제」(가족단위 영농)를 시범 실시

- 북한은 04.1 「집단영농 방식 완화 및 가족영농」시범 실시를 결정
- 이에 따라 황북 수안·함북 회령 등지의 일부 협동농장을 선정, 分組를 가족단위(2~5가구)로 재편하고 농지를 할당하여 경작토록 조치
- \* 04.12 김용술 무역성 부상, “협동농장에 분조를 보다 작게하거나 포전 담당제를 조직할 권한을 부여”

#### ○ 私耕地를 확대하고 토지사용료를 신설하는 등 농지제도를 일부 개편

- 사경지 허용 면적을 30~50평(58년 지정)에서 400평(뽕기밭)으로 확대(02.7)하고 기관·기업소별 副業地를 소속 세대별로 분배
- 가동중단 공장의 遊休人力을 활용하고자 노동자들에게 토지를 분배하여 경작토록 조치
- 농지를 ① 협동농장 ② 기관·기업소 부업지 ③ 개인 경작지 등 3부류로 구분하고 토지사용료를 차등 부과(최저 53전~최고 60원/평)
  - \* 1부류(농장) : 54전~36원, 2부류(기관·기업소) : 88전~60원, 3부류(개인 경작지) : 12원

### ■ 분배방식 : 동일하게 나누어 주는 평균주의를 타파하고 인센티브를 강화

- 식량 무상 배급제 및 2중 곡가제를 폐지하여 재정부담을 경감
  - 곡물을 고가(쌀 kg당 82전)에 수매하여 저가(8전)로 공급해 오다 수매가(40원)에 수송비를 더하여 대폭 인상된 가격(44원)으로 공급
    - \* 02.7 곡물수매가는 50배(82전→40원), 주민 공급가는 550배(8전→44원) 인상
- 국가수매량을 축소하여 농민들의 생산동기를 유발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

- 수확량의 70~80% 국가납부 ⇒ 토지·관개용수·전기 사용료 및 생산비 명목으로 50~60% 정도만 납부, 나머지는 협동농장이 자율 처분

\* 04.1 청산협동농장 최영호 부위원장, “토지사용료와 생산비용이 총수입의 약 50%를 차지함”

- 협동농장의 연말분배시 실적평가 단위를 작업반(80~120명)에서 분조로 전환, 농민들의 경쟁심리 자극

\* 04.2 조총련 월간지 「조국」, “경제개혁조치 이전에는 작업반별로 분배, 분조들의 몫이 똑같았으나 지금은 분조별로 분배, 분조간에도 차이가 발생하며, 03년 청산협동농장의 경우 현금이 1인당 평균 6만원, 가장 많이 받은 분조에서는 12만원을 받았음”

#### ○ 식량공급은 기관·기업소의 조달책임을 강화하여 재정부담을 축소

- 군대, 당·정 간부, 평양시민 등 특수계층에는 국가가 식량을 우선 공급

- 일반주민들에게는 기준량(700g/일)의 절반 이하(300g/일)를 공급하고 나머지 부족한 식량은 시장을 통해 자력으로 해결하도록 조치

- 이들 중 외화수입이 있거나 해외에서 식량조달이 가능한 기관·기업소 등은 종업원들에게 식량을 자체 공급하도록 조치

집단영농의 틀은 아직 유지한 가운데 곡물생산·분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축소하고 협동농장의 자율권을 강화, 생산성 향상을 도모

## 나. 기업개혁

### ■ 추진 연혁

02.7 | 국가계획 범위 축소, 지배인 권한 강화 등 기업 자율권 강화

03년 | 회계법 제정 등 관련 법제를 정비하면서 전문지식을 갖춘 30~40대를 기업책임자로 대거 기용

04년 | 일부 공장·기업소에서 「기업개혁」 조치를 시범 실시

### ■ 경영관리 : 지배인의 권한을 강화하고 기업의 경영자율권을 확대

○ 02년 경제개혁 조치시 종래 「공장 당위원회」에 집중되어 있던 기업의 경영권한을 지배인에게 이양

\* 당비서의 역할은 정치지도로 제한, 기업경영의 의사결정권을 지배인에게 이양

○ 04년부터 일부 공장·기업소를 대상으로 생산계획 수립·임금 결정·노무관리 등에 대한 지배인의 경영권을 강화

\* 04.9 탈북자, “7·1조치보다 진일보한 공장·기업소 경영자유화 방안이 올해 초부터 시범 실시중이며 12월말경 모든 기업소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

### ■ 생산관리 : 국가계획 범위를 축소하고, 기업의 자재조달 여건 개선

○ 02년 경제개혁 조치시 중앙계획 대상을 중요지표(공업 총생산액·건설투자, 전력·철강 생산량 등)로 축소하고 세부계획 수립권한은 지방과 기업에 위임

- 계획초과 생산품, 자체 자재조달 생산품 등의 시장판매를 허용, 채산성 증대를 도모

○ 04년 들어 국가계획위원회는 전략지표·중요지표만 「현물 계획」으로 하달하고, 나머지는 「금액 계획」으로 하달, 기업운영에 융통성을 부여

\* 현물지표 : 톤·미터·마리·대수 등 현물단위로 표시되는 사용가치량

- 「물자교류시장」에서 자재 거래에 대해 기업간 직접 거래를 허용, 기업의 원자재구입 여건을 개선



- 공장에서 자체 생산한 소비품의 가격·규격을 자율 결정토록 함으로써 시장 수요에 適期 대응토록 조치

## ■ 재무관리 : 기업의 재정운용 권한을 확대, 효율적 자금사용을 유도

- 03.3 회계법을 제정한 데 이어 기업경영의 최종목표를 「원가 절감」에서 「순소득 증대」로 수정(04.4 재정법 제34조), 이윤 중심의 기업운영을 지향
- 기업의 국가납부 및 투자·경영자금 조달체계를 개선하고 자금 운용에 관한 기업 재량권을 확대
  - 기업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완화하고 국가납부 방식도 기존의 비율 방식에 定額납부 방식을 병행, 기업의 부담을 축소
    - \* 04.4 재정법 제28조 개정 : 기업의 재정계획 수행실적 평가 대상으로 국가예산 납부실적만 적시하고 舊法에 규정된 원가·이윤계획을 삭제
  - 그동안 국가재정을 통해 공급하던 기업의 유동자금을 은행대출 등을 통해 자체 조달토록 함으로써 자금낭비 등의 비효율성을 제거
    - \* 04.7 탈북자, “빌려온 운영자금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야 하므로 경영능력이 부족하여 적자를 내는 지배인들은 아예 지배인 자리를 내놓고 있음”

- 기업의 현금보유 한도를 확대하고 재정지출 한도 이상의 추가 지출도 허용, 시장을 통한 자재의 適期 구입 등 경영활동의 탄력성을 제고
  - \* 04.4 재정법 제29조 개정 : “기업은 자금을 생산경영 및 인민적 시책 등에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舊法 : 재정계획에 따른 기업자금 사용을 명시)
- 해당지역의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소규모 설비를 이관·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기업에 부여, 사장되는 遊休설비의 이용률을 제고

## ■ 노무관리 : 임금지급과 노동력 관리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

- 02.7 경제개혁 조치시 기업이 임금을 상·하한선 내에서 자율 결정토록 허용
  - \* 경제개혁 조치 이전 북한은 임금의 기준·등급·조정 등의 결정을 모두 국가에 의해 통일적으로 집행
- 04년부터 임금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국가납부금 외 나머지 이윤 내에서 자체배분을 허용하는 등 기업의 임금결정 및 지급 권한을 확대,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비를 보전
  - \* 04.6 조총련 월간지 「조국」, “평양 신발공장은 임금을 1만원으로, 선교 편직공장도 현재 4,000원에서 3~5배 인상할 계획” 보도

- 그 동안 국가에서 직접 노동력을 배치해 오던 것을 기업이 유희 노동력을 탄광·농장 등 개별단위와 계약을 맺어 파견토록 함으로써 노무관리의 유연성 증대
- 비효율적 사무직·관리직 근로자를 감축한다는 방침하에 인력 구조 조정을 추진

#### 최근 북한이 추진중인 기업부문 개혁조치는

- 경영전반에 대한 지배인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시장원리 도입을 통해 기업의 자율권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중국이 개혁초기 실시한 기업개혁 조치와 유사한 수준

\* 중국 기업개혁 : ① (78~83) 이윤유보제, 기업자주권 확대 ② (84~86) 이윤상납 ⇒ 납세제 ③ (87~93) 請負경영제(소유·경영 분리) ④ (94~ )근대적 기업제(민영화)

## 다. 상업개혁

### ■ 추진 연혁

50.10.11 | 내각결정 제9호로 「농민시장 개설」을 결정

92.4 | 「사회주의 상업법」을 제정한 데 이어 99.1, 04.6 수정

03.3 | 종합시장 개설 등 「상업유통」 부문 개혁조치 단행

### ■ 상업관리 : 국영공급 체계 ⇒ 시장유통체계 도입

#### ○ 상업의 기능을 「對民 配給」에서 「제품의 유통·판매」로 전환

- 종래 상업을 「인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으로 규정하고 배급기준에 따라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공급, 생산·유통·판매를 분리운영

\* 03.1 조선신보, “지난 시기 생산, 유통, 판매부문을 독립적으로 운영, 생산단위는 판매되건 말건 생산만 하면 계획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비효율성 존재”

➔ 주민들이 시장과 상점에서 생필품을 자체 구입토록 하는 체계로 변경, 생산자와 판매자간 직접거래가 이루어지고 생산·유통·판매의 일원화를 허용하여 효율성 증대를 도모

- \* 03.4 조선신보, “낙연 합작회사는 생산과 유통, 판매체계를 갖추어 나갈 계획”

### ○ 시장을 합법적인 상품유통 체계의 하나로 인정

- 종래에는 시장을 「자본주의 잔재가 남아 있는 뒤떨어진 상업 형태로서 전인민적 소유와 공업화가 완성되면 없어질 것」으로 규정

- \* 북한은 농민시장에 대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형태로 인식

- ➔ 통제의 대상이 아닌 「사회주의 상품유통의 일환」으로 규정(03.4 국가계획위원회 최흥규 국장)

- \* 03.12 조선신보, “지난 시기 시장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으나, 이제는 경제관리를 위한 경제적 공간으로 이용하고 적극 장려”

### ○ 상품가격

- 전국 각지의 동일상품에 대해서는 유일가격제(국정가격)를 적용

- ➔ 02년 경제개혁 이후 국정가격과 시장가격 등 2중 가격제로 운영
-

## 유통구조 : 종합시장 개설, 유통의 전문화 · 다양화 진행

- 종래 국영상점을 위주로 하고 농민시장을 보조적으로 허용해 왔으나 03.3 이후 종합시장 중심으로 국영 · 일반상점 등 유통망을 다양화
  - 농민시장을 자본주의 상설시장 형태의 종합시장으로 확대 개편
    - \* 03.12 조선신보, “종합시장의 운영은 경제관리 개선 조치의 심도와 폭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변”
  - 일부 실적이 부진한 국영상점의 운영권을 능력있는 기관 · 기업소에 이관함으로써 국영상점과 일반상점간 경쟁을 통한 발전을 도모
- 평양 · 청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국 · 러시아 등 외국과 협작을 통해 대형 쇼핑센터 · 백화점 건설을 추진하는 등 상업유통 부문도 대외개방 대상에 포함
- 전문도매상 · 24시간 편의점 등 새로운 형태의 유통망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 전문점이 생겨나는 등 유통의 다양화 · 전문화 진행

## 부문별 운영체제

- 시장 운영 : 기존의 농민시장을 종합시장(300여개 목표)으로 개편

- 시·군·구역별로 종합시장 건물을 신축하고 매대(賣臺)는 개인, 협동단체 및 기업에 임대

\* 상업법 제86조 개정 : 농민시장의 개념을 폐지하고 이를 일반적 시장으로 변경, 시장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권을 해당 상업지도기관에 부여

\* 03.12 조선신보, “통일거리 시장 판매 매대중 약 5%는 공장·기업소 몫으로 할당”

- 종합시장은 시·군·구역의 면적과 주민 수를 고려하여 시장의 매대 수와 시장 위치를 결정

➔ 주민 수에 따른 시장 매대 수

주민 수	3~4만명	4~6만명	5~7만명	7만명 이상
매대 수	600석	900석	1,200석	2,000석

- 거래품목을 기존의 농산물·부업제품에서 군수품 등 일부 국가 통제품을 제외한 전 소비품목으로 확대

- 거래가격은 시장 需給사정과 판매자와 구매자간 흥정에 따라 결정되나 쌀·신발·비누 등 대중소비품은 한도 가격을 정해 통제

\* 통일거리 시장은 쌀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최고한도 가격을 설정하고 10일 간격으로 조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시장에서는 매대운영자를 대상으로 자릿세 개념의 「시장사용료」와 소득세 형태의 「국가납부금」을 징수

\* 03.12 조선신보, “시장에서 상품을 파는 단위는 시장사용료와 별도로 자기 소득에 따른 국가납부금을 제때 바쳐야 한다”

○ **상점 운영** : 운영주체에 따라 국가가 운영하는 「국영상점」과 기관·기업소가 운영하는 「일반상점」으로 2원화

\* 상업법 제81조 : 상점·식당·봉사소 등을 운영하려는 기업소 등은 중앙상업지도기관의 승인(舊法) 대신 해당 상업지도기관의 영업허가를 받도록 개정

\* 일반상점은 기존 국영상점을 기관·기업소에 임대하여 자율 운영토록 한 「위탁상점」과 기관·기업소가 개설한 「직매장」으로 구분

- 국가는 영업이 부진한 일부 국영상점을 기관·기업소·인민반에 임대·분양하고 임대료를 징수

- 가격책정은 국가계획에 따라 유통되는 상품의 경우 국정가격으로 판매하고 비계획상품의 경우 합의가격(상품위탁자 - 상점간)으로 판매

- 개인 명의 상점운영은 불허되고 있으나 일부 자금력이 있는 개인은 기관·기업소 명의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사례도 발생



### ○ 식당 운영 : 국영식당과 「합의제 식당」으로 2원화

- 국영식당은 국가가, 합의제 식당은 기관·기업소가 경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도 수익금 제공 조건하에 국영식당을 인수하여 운영
- 국가에서 정한 기본메뉴는 국정가격으로, 식당의 자체개발 메뉴(「특별료리」: 03.12 조선신보)는 합의가격으로 판매
- 국가는 수익의 일정액을 「국가납부금」 명목으로 회수
- 고객유치를 위해 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수익위주 경영이 확산

### ○ 기타 서비스 : 위락업 등 서비스 업종의 개인운영을 허용

- 자금력을 갖춘 주민들이 기관·기업소로부터 맥주집·가라오케·목욕탕·PC방 등을 임대하여 운영하거나 신규 개업

최근 북한의 상업유통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는 북한이 시장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상품유통의 일환'으로 인정하면서 '계획과 시장의 공존'을 모색하는 정책 전환에 따른 것으로 평가

## 4. 대외경제

### ■ 경제개방 : 경제특구 추가 지정 및 남북경협 적극 추진

- 외자유치 확대를 위해 신의주(02.9) · 금강산(02.10) · 개성(02.11) 특구 추가 개방

\* 04.8 내각은 양빈의 구속(02.10), 중국의 반대 등으로 신의주특구 폐지를 결정

- 남북경협 관련 14개 합의서 및 22개 법 · 규정을 채택하고, 개성공단 시범단지(2.8만평) 개발과 금강산 육로관광 등 남북경협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대남 의존도 심화

\* 남북교역(대남의존도) : 01년 4억달러(15.0%) → 02년 6.4억달러(22.1%) → 03년 7.2억달러(23.2%) → 04년 7억달러

### ■ 대외무역 : 무역 분권화, 조직 정비 등 무역관리 체계 개편

- 무역 분권화를 통한 무역활성화를 도모하면서 관련 행정업무는 일원화

-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무역활동을 시 · 군 및 기업소 단위 까지 허용, 하부단위 경쟁을 통한 무역 활성화를 유도

- 수출입 수속 등 무역행정 업무는 무역성으로 일원화,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무역질서를 확립

### ○ 무역관리기구 정비 · 부실지사 정리를 통한 효율성 제고

- 04.7 민경련을 민경협으로 확대 개편하고 업종별 전문회사를 신설
    - \* 04.9 삼천리총회사를 삼천리(IT · 출판물) · 명지(중공업 · 광업) · 광복(철도 · 도로)총회사로 분사시켜 업무를 분할
  - 04.1 무역성 산하에 「국제무역중재위원회」를 신설하고 대북투자 관련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내 외국 법률컨설팅회사 설립을 허용
    - \* 영국(04.8) · 싱가포르(04.10) · 이태리(04.11) 등과도 합작 법률사무소 설립
  - 영업실적이 부진한 해외진출 무역지사 및 북한식당을 철수시키거나 통폐합을 추진
  - 반면에 우수 해외 주재원의 근무기간을 연장(3년 → 6년)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
-

## 외자유치 : 외자유치 관련 법·제도 개선, 조직 정비, 해외동포 우대

### ○ 외국기업의 대북투자 촉진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

- 04.9 북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월 80~120달러에서 38달러로 인하함으로써 인니(72달러)·베트남(35~45달러) 등 여타 개도국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제시
- 합영회사의 직접수출 허용, 임금·전기료 등 경상비용의 북한 원화 지불 허용, 보험가입 자율화 등 외자유치 관련 법규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
- 주변국에 비해 낮게 책정된 세금·공과금 우대조치를 적극 부각
  - \* 기업소득세 10~25%(동남아 30~35%), 거래세 1~15%(동남아 30~60%) 전기 사용료 67달러/천kWh(주변국 80~120달러), 물사용료 38달러/천m<sup>3</sup>(주변국 120~130달러)

### ○ 해외교포 대상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각종 특혜조치를 제시

- 04.10.21~25간 해외 한인교포(21개국 164명) 대상 투자설명회를 최초로 개최하고 해외한인무역협회(OKTA) - 조선국제무역촉진 위원회간 상호협력 합의를 체결

- 개성공단 인근에 교포기업 전용 공장부지 조성 계획 및 나선특구 인프라 투자시 250만평의 토지 무상지원 방침을 표명(무역성 부상 김용술)
- 경제특구 이외 지역에서의 단독 기업·은행 설립과 광산개발에 대한 직접투자를 허용할 예정

북한은 대외경제 관련 법규·제도 개선과 금융·무역분야를 중심으로 시장경제 적응 노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대외 경제개방 확대를 모색

- 특히 최근 들어 해외교포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나, 중국이 개혁·개방시 화교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위해 제시한 특혜 수준보다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

\* 중국은 「대만동포 투자 우대조치」(93.4), 「대만동포 투자장려 규정」(88.7), 「화교·홍콩·마카오 동포 투자에 관한 국무원규정」(90.8), 「대만동포 투자보호법」(94.3)을 제정, 각종 특혜를 제공

## III 성과 및 문제점

### 1. 성과

#### ■ 의식 변화: 시장경제 마인드 확산, 노동의욕 제고

- 국가계획 영역이 축소되고 시장기능이 확대됨으로써 개인과 기업의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등 사회전반에 걸쳐 의식개혁이 진행
  - 기업평가 기준을 종래 「생산물」 위주에서 「이윤」 중심으로 전환, 수익성에 기초한 기업경영 마인드 생성
    - \* 03.11 조선신보, “기업들은 종전에는 생산만 하면 되었으나 「번 수입」에 의한 평가를 받게 되면서 판매까지 신경써야 되니 품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 배급제가 폐지되고 실적에 따른 차등임금제 실시로 사적 소유 개념과 「일한 만큼 번다」는 의식이 확산
    - \* 03.6 조선신보, “경제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조선에서는 가정주부들의 직장복귀가 늘고 있다”
    - \* 02.10 조선신보, “2.8직동청년탄광(평남 순천)은 탄부들의 생활비가 월 평균 3만원이며, 최고 많은 사람은 6만원을 넘었다”

- 종합시장은 경영자에게 품질·상표·경쟁의식 등 시장경제 체제의 경영기법 습득 기회를 제공
- 부업·장사 등 일부 영리활동이 합법화됨에 따라 사적 경제활동이 「생존」 차원에서 「이윤추구」 차원으로 진전되는 등 변화의 잠재력이 증대

### ■ 산업생산성 제고 : 농업·경공업 생산성 향상, 상업활성화

- 경제개혁 조치가 투자재원 부족, 에너지·원자재난 등으로 산업 전반의 생산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
- 그러나 농업·경공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상거래가 활성화
  - 농업부문에서는 영농의욕 증대, 토지이용률 제고 등으로 곡물 생산이 증가(01년 395만톤 → 02년 413만톤 → 03년 425만톤 → 04년 431만톤)
  - \* 04.2 최영호 청산협동농장 부위원장, “남새는 질에 따라 등급이 나뉘어져 있고 흠이 너무 많으면 수매가 되지 않으니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함”
  - \* 04.1 청산협동농장 최영호 부위원장, “농장원들은 이전에는 조건이 좋지 않아 농사를 단념했던 토지도 토지사용료를 내는 만큼 효과적으로 이용할 궁리를 하게 되었음”

- 공업부문에서는 공장·기업소 지배인의 경영자율권 확대로 수익 창출에 주력, 특히 경공업부문 성장률이 증가(03년도 2.3% 성장)
  - \* 03.12 조선신보, “신의주 신발공장·강서 신발공장을 비롯한 각지 신발 공장들에서는 7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00만켤레의 각종 신발을 더 생산”
- 상업부문에서는 종합시장이 활성화됨으로써 03년도 도·소매업 성장률이 9.8%로 나타나 전체 성장률 1.8%를 크게 상회
  - \* 04.3 방북 외국인, “통일거리 시장을 방문해 보면 북한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

## 2. 문제점

### ○ 경제개혁 추진 여건 불리

- 북한지도부가 경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으나, 체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경제개혁·개방 노선을 공식적으로 채택할 수 없는 상황
- 식량·에너지 등 주요물자를 대외원조에 의존하는 가운데 SOC가 낙후되고 자체 투자재원이 고갈된데다 시장경제 운영 전문가도 부족한 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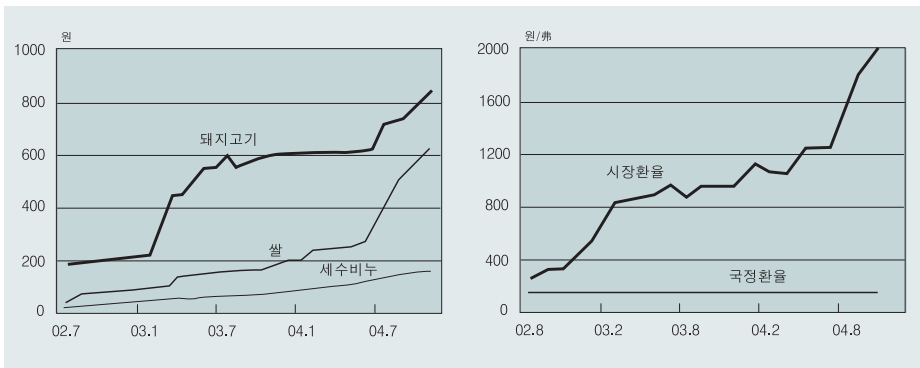


- 핵문제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이 강화되면서 대외 경제환경 악화로 경제개혁 추진에 필요한 자본·기술 도입이 곤란

○ 이와 함께 개혁 부작용으로 인플레이션·빈부격차·부정부패 심화

- 물자공급 부족에 따른 인플레이션 및 환율 급등으로 생활고가 가중되고 화폐교환설이 유포되는 등 경제혼란 현상도 야기

➔ 물가·환율 인상



\* 04.9 시장가격은 02.7에 비해 곡물 5~8배, 육류 4~7배, 의류·가전제품 등은 2~7배 상승, 암시장 환율은 02.8 당시 미화 1달러당 250원에서 2,000원까지 상승하였다가 05.1 현재 물가·환율이 소폭 하락 추세

- 장사·부업 등 사적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계층간·지역간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사회갈등 요인으로 작용

- 拜金主義 확산으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강·절도 사건 등 자본주의적 병리 현상도 점증
  - 무분별한 외화벌이 활동으로 중국내 식당설립이 급증(01년 26개 → 04년 90여개)함에 따라 수익성이 저하되고 여종업원 이탈과 사상이완 등 일탈행위가 증가, 이에 따라 일부 식당 철수 진행 중
-

## 부 록

### | 목 차 |

- ① 경제개혁 연표
  - ② 북한의 경제개혁·개방 주요 조치
  - ③ 북한의 농업개혁 조치 주요 내용
  - ④ 북한의 기업 개혁 조치
  - ⑤ 북한과 중국·베트남의 초기 경제개혁 비교
-

## ① 경제개혁 연표

84. 9	합영법 제정
91. 12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설립
97. 6	나선지대내 환율인상(1달러:2.2원→200원), 소규모 자영업 허용, 독립채산제 강화 등 「시장경제 요소 도입」 시험 실시
00. 6	남북정상회담
01. 1	김정일, 상해 「푸동(浦東)지구」 등 경제개혁 현장 방문
01. 1	신년 공동사설에서 「신사고」 제시
02. 7	「경제관리 개선조치」(물가·임금·환율인상, 배급제 폐지, 경영자율권 확대)
02. 7	토지사용료 제정
02. 9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국방공업 우선, 경공업·농업 동시발전) 제시
02. 9~11	신의주·개성·금강산 특구 설립
02. 10	당·내각의 고위 경제시찰단 방한
03. 3	종합시장 개설, 개인사업 허용 등 상업유통 부문 개혁조치 단행
03. 3	「인민생활 공채」 발행
04. 1	「가족(2~5세대)단위 영농」 및 「기업개혁」 시범 실시
04. 4	김정일 방중, 박봉주 총리 농촌개혁 시범마을(韓村河)시찰

## ② 북한의 경제개혁 · 개방 주요 조치

구 분	주요 조치 및 내용
200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관리 개선」조치(02.7) 단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가(25배) · 임금(18배)인상</li> <li>- 환율 현실화 : 1달러당 2.2원⇒153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2.12 외화결제 기준통화를 美달러화에서 유로화로 전환</li> </ul> </li> <li>- 배급제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곡물의 매점 · 매석 방지위해 「식량공급카드」 발급 지속</li> </ul> </li> <li>- 기업 경영자율권 확대(의사결정권 : 당간부 ⇒ 지배인)</li> <li>- 개인경작지 확대 : 30~50평 ⇒ 400평</li> </ul> </li> <li>○ 경제특구 확대 (02.9 ~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의주 · 개성 · 금강산특구 지정</li> </ul> </li> </ul>
200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업유통 부문 개혁 조치(0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 농민시장 ⇒ 종합시장으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품목 확대(농산물→공산품)</li> </ul> </li> <li>- 국영상점 : 기관 · 기업소에 운영권 이양</li> </ul> </li> </ul>
200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 · 기업부문 세부개혁(04.1)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단위 영농」 시범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세대 단위로 농지를 할당, 자율 영농</li> </ul> </li> <li>- 「기업개혁」 시범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국가납부금 하향조정, 현금 보유한도 확대, 자체실적에 따른 임금인상 허용 등</li> </ul> </li> </ul> </li> <li>○ 외자유치 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자본의 대규모 쇼핑센터 · 백화점 합작 투자 허용</li> <li>- 04.10 최저임금 인하 : 80~120달러⇒30유로(38달러), 세제인하, 해외동포들에게 나선 외 단독투자기업(은행포함) 허용 및 광산개발권 부여 검토(김용술 무역성 부상)</li> </ul> </li> </ul>

### ③ 북한의 농업개혁 조치 주요 내용

구분	조치	주요 내용
곡물 생산	분조관리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단위(2~5세대) 분조 구성을 확대</li> <li>• 일부지역에서는 농지를 시범적으로 분조에 분배</li> </ul>
	실적분배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동농장의 연말 분배시 실적평가단위를 작업반(80~120명)에서 분조(10~25명)로 전환</li> </ul>
	재배작물 선택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벼를 제외한 나머지 재배 작물에 대한 선택권 확대</li> </ul>
	토지사용료 징수 (0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를 ①협동농장 ②기관·기업소 부지 ③개인경작지(뺨기밭) 등 3부류로 구분하고 차등(최저 53전~최고 60원) 부과</li> </ul>
	개인경작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래 개인이 임의로 개간·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30~50평에서 400평(뺨기밭)으로 확대</li> </ul>
	개인영농제 시범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함북 회령·무산 등 일부 지역에서 협동농장 토지를 개인에게 할당·경작토록 하는 개인영농제도 시범적으로 실시</li> </ul>
곡물 수매	2중 곡가제 폐지 (0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곡물을 고가(쌀 kg당 82전)에 수매하여 1/10 수준인 저가에 공급해 오다 수매가(40원)에 수송비까지 부과, 곡물가를 대폭 인상하여 공급(44원)</li> </ul>
	국가 납부량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확량의 70~80%를 국가에 납부했으나 토지사용료와 생산비 명목으로 50~60% 정도만 납부, 협동농장 자율처분량 증가</li> </ul>
곡물 분배	식량배급제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매가(쌀 kg당 82전)의 1/10 수준에서 거의 무상(쌀 8전)으로 공급하던 식량 배급제 폐지</li> </ul>
	식량 공급대상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제 보위계층에게는 기준량(700g)을, 일반 주민에게는 기준량의 절반인 300g을 공급하다 04.3부터 공급대상 기관·기업소를 더욱 축소하고 자력조달을 강화</li> </ul>

#### 4) 북한의 기업개혁 조치

구분	2002년	2004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계획대상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요지표 (공업 총생산액·건설투자 등)에 한해 국가계획 하달</li> </ul> </li> <li>• 세부계획 권한 지방·기업소 위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물지표' 의 수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물지표 : 톤·미터·마리 등 현물단위로 표시되는 사용가치량</li> </ul> </li> <li>• 국가 자재조달이 없는 국가계획은 기업소 자체 생산</li> </ul>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제정 권한 일부 하부 이양</li> <li>• 소비품의 시장판매(30%) 허용</li> <li>• '물자교류시장'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자교류시장 : 기업들이 일부 원자재 등을 상호 교환토록 설치한 시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생산물 가격·규격 승인제 폐지</li> <li>• 소규모 설비 처분권(이관·폐기 등) 부여(감독기관 승인)</li> <li>• '물자교류시장' 내에서 자재거래에 한해 기업간 직거래 허용</li> </ul>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수입' 에 따른 납부제도 도입 ⇒ 성과급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수입 : 임금+이윤</li> </ul> </li> <li>• '감가상각금' 유보, 재투자 자금으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가상각금 : 설비가치의 마모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납부비율 재조정(정액납부 병행)</li> <li>• 기업의 현금 보유한다 확대</li> <li>• 재정지출 한도 이상의 지출 허용</li> <li>• 유동자금의 은행용자</li> </ul>
노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일생활비등급제' 폐지, 국가기준 내에서 자체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일생활비등급제 : 임금의 기준·조정·등급 등을 국가가 일률적으로 결정</li> </ul> </li> <li>• 세부 노동계획 수립 권한 위임</li> <li>• 가급금(60→12가지)·상급(90→80가지) 축소, 기업에 상급(보너스) 추가 제정권 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지급에 대한 일률적 계산방법 폐지(기준은 국가가 제정)</li> <li>• 잉여인력 자체 파견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견인력에 대해서는 현금 즉시 지불제 시행</li> </ul> </li> <li>• 상급·장려금 지불 승인제 폐지</li> </ul>

## ⑤ 북한과 중국·베트남의 초기 경제개혁 비교

구분	북한(2002.7~ )	중국(78~84)	베트남(86~92)
공식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식적인 「개혁노선 추진」 미발표</li> <li>- 내부적으로 「김정일 지침」에 따라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8.12 제11기 3중중회에서 농업생산력 증대, 대외개방 등 개혁·개방 선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8.12 제6차 당대회에서 「도이모이」정책 채택</li> </ul>
가격·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정가격제를 유지하면서 물가를 평균 25배 인상</li> <li>종합시장 개설(03.3), 시장 가격 용인</li> <li>국정임금제下 임금을 평균 18배 인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산물 수매가 인상(78)</li> <li>일부 소비재를 중심으로 시장가격제 도입(79)</li> <li>국영기업의 국정임금제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가격제」 도입 (주요 원자재 제외)</li> <li>국영기업의 국정임금제下 임금 소폭 인상</li> </ul>
배급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산물·생필품 배급제 폐지</li> <li>* 식량은 공급카드제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산물 배급제 폐지(93)</li> <li>* 생필품 배급제는 당초 부터 不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산물·생필품 배급제 폐지(86)</li> </ul>
환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화와 바꾼돈표」를 폐지하고 단일 환율제 실시(02.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4년까지 공식환율과 내부결제 환율의 2중 환율제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9년 단일환율제 실시</li> </ul>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경작지 확대 (30~50평 → 400평)</li> <li>가족단위 영농 시범실시(04)</li> <li>국영 및 협동농장제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영농제」 실시(78)</li> <li>「인민공사」(집단영농) 해체(8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영농제」 실시 (88)</li> </ul>
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과이윤 기업 유보</li> <li>물자교류시장 개설</li> <li>개인기업 불허</li> <li>조세제도 未도입</li> <li>- 국가납부금제 유지</li> <li>지배인 권한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 이윤유보제 도입(79)</li> <li>생산재시장 개설(79)</li> <li>개인기업 허용(82)</li> <li>利改税(법인소득세) 도입(83.6)</li> <li>「공장장 책임제」(8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기업 허용(86)</li> <li>기업 생산·판매에 대한 정부통제 폐지 (88)</li> </ul>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총서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5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녀성」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송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곤 외	공저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현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공저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향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3-16	통일예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공저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윤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

---

##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통일정세분석 2005-02

---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901-2525(代), 팩스:901-2544

인쇄처 현프린트 전화: 2273-7142

인쇄일 2005년 3월 일

발행일 2005년 3월 일

---